

PwC관세법인

관세 통합 관리 서비스



피더블유씨관세법인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자료 보관 의무 위반 시 허위신고죄 적용

- 자료 보관 의무(관세법 제12조) 위반 시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자료를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직접 국내에서 자료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료 보관 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한 사례

- 허위신고죄 적용 시 법인과 대표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과벌적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자 간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상향

- 특수관계자 간 자료 미제출 시 최대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22.1.1. 시행)되었습니다.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의 경우,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결정 방법별로 각기 다른 자료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 간 이전가격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추후 세관 요청 시 적시 제출을 위하여 본사로부터 특수관계자 간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wC관세법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 자료 보관 Support

- 매년 수출입 관련 필수 자료 보관 여부 검토
- 누락 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료 보관 의무 충족 여부 관련 High-level 보고서 작성

■ 특수관계자 간 자료 관리 Support

- 회계연도 종료 후 특수관계자 간 자료 보관 여부 검토
- 본사로부터 이전가격 관련 근거자료 수취 및 확보 지원
- 특수관계자 간 자료 보관 수준 적정여부 관련 High-level 보고서 작성

무엇이 문제일까요?



- 수출입 기업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수정신고 사유가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이 추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매입세액 100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추가 매입세액공제 적용	세관장은 수입부가세 추정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따라서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 부담 100 절감(▼) 효과	부가가치세 부담 100 증가(▲) 효과

PwC관세법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관세 사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도출을 통한 세액 절감
사전진단을 통해 리스크 사항(예: 품목분류 오류, 과세가격 신고 누락, 부적정한 이전가격, 관세환급·감면신청 오류 등)을 도출하고 회사가 자진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와 가산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 유권해석 등을 통한 대응 방안 수립

관세조사 통지 이후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과세 논리 쟁점(이슈)에 대하여 관세 평가분류원,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추후 관세조사 사전 대비 가능

세관 심사팀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리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추후 실제 관세조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는 사전신고 원칙

절차법인 외국환거래의 특성상 사후에 위반사항 발견 시 치유가 어렵고, 위반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므로, 특정 거래가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과 그 해결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의 외환검사 동향

관세청은 불법 외환 거래 단속을 위해 서울본부세관에 조사 2국을 신설 및 외환검사과를 3개 과로 확대 개편(2021년 3월)하여,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실시 외환 검사 방식(기업에 4주 간 상주)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예상됩니다.

* 지급 수령 방법(제3자 지급·영수, 상계 등) 미신고 여부, 불법자본거래(해외 부동산, 현지금융, 금전대차 등),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및 고의적인 대외 채권 미회수를 통한 국부 해외 유출 등

PwC관세법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이 활용하는 외환 위험지표 및 외환 B/S 분석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향후 외환검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외환 사전진단을 통해 회사가 가지는 외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사는 외환거래의 Compliance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외환 사전진단을 통해 파악된 리스크 및 신고대상 거래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세청의 실시 외환검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최근 FTA 부당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세관 당국의 수출입업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추징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메가 FTA인 RCEP이 발효됨(2022년 2월)에 따라, 회사의 비용 절감 기회 모색을 위해 RCEP 최적화 활용 방안의 검토가 필요 합니다.

PwC관세법인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모의검증 실시

- 회사가 추후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제출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세관의 원산지 검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모의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협정관세 적용 품목이 원산지 적용 요건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미충족 시 사전 보완이 가능하도록 자문할 수 있습니다.

■ FTA 최적화 활용 방안 모색

-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물류비 감소를 위한 새로운 물류거점 마련 등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Customs Compliance Total Care Service

PwC관세법인이 제공하는 Customs Compliance Total Care Service를 통해 관세 관련 위험을 최소화 하고, 예측 경영이 가능하며, 개별 기업에 맞는 최상의 관세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아래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PwC관세법인은 전 관세청 공무원, 변호사, 관세사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관세 컨설팅 업체로서 2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전문 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조사·진단 경험을 통한 핵심 역량 보유
-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세무전문가들과의 협업
-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 객관적 시각의 진단 및 프로세스 구축 지원 가능

상시 자문 서비스



국내·외 일반 관세 관련 자문

- 과세 가격, 품목 분류, 수출입 요건, 관세 법령 등에 대한 일반 관세 관련 질의 응답
- 수출입 관련 변경된 국내·외 제도 및 이슈 사항 업데이트 (필요시)



외환 관련 자문

- 특정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대상 여부 등 외환 관련 질의 응답
- 신고 대상 외환거래의 경우 신고 방법 자문 및 신고 대리 서비스 제공 가능



국내·외 FTA 관련 자문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물류량 변경 등 회사 내부 변경 사항 발생시 협정관세 충족 여부 등 FTA 관련 질의 응답
- FTA 및 글로벌 통상 이슈 사항 업데이트 (필요시)



Contacts

이영모 대표

02-3781-3140

youngmo.lee@pwc.com

문을열 전무

02-3781-2563

eulyeol.mun@pwc.com

서정욱 상무

02-709-8351

jungwook.seo@pwc.com

백정환 상무

02-709-4089

junghwan.paek@pwc.com

강정모 이사

02-3781-1768

jungmo.kang@pwc.com

김현준 이사

02-3781-9161

hyun-jun_1.kim@pwc.com

www.pwccs.co.kr

S/N: 2203-LF-001

© 2025 PwC Customs servic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